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

미국-칠레 FTA는 미국이 남미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NAFTA를 통해 캐나다 및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미국은 칠레와의 FTA를 통해 남미의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의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메리카 대륙을 아우르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추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미국-칠레간 FTA 협상은 2000년 12월에 개시되어 14차에 걸친 회의 끝에 협상을 개시한지 2년만인 2002년 12월 11일에 타결되었다. 동 협정은 양국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03년 6월 6일 양국의 서명을 거쳐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미국, 칠레 양국은 FTA 협정 발효 즉시 85%의 달하는 상품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품목의 대부분도 4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미국 농산물의 4분의 3 이상이 4년 이내에 칠레시장에 무관세로 수출될 수 있게 되었다. 칠레는 미국 농산물에 대한 모든 관세를 2016년까지 완전 철폐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의 돼지고기, 쇠고기, 대두 및 대두박, 소맥, 사료곡물, 감자, 가공식품 등의 대 칠레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 특기할 사항으로 칠레는 자국의 식량안보 등의 이유로 소맥 등에 적용해 온 가격대(price band)를 폐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칠레가 기존에 맺은 캐나다 및 EU와의 FTA에서는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미국-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1월 1일 현재, 칠레로 수출되는 미국 상품의 90%가 무관세이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칠레 상품의 95%가 무관세가 적용된다.

1. 시장접근

1.1. 관세철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양 측은 기존 관세를 인상할 수 없고, 새로운 관세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양측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아래와 같은 부속서 3.3에 따라 상품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여야 한다. 미국은 협정 발효 즉시 칠레산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당사국은 <부속서 3.3.>에 명시된 양허계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상대국과 협의할 수 있다. 양측은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양허수준을 동결시키거나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해 놓고 있다.

<부속서 3.3.> 관세 철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양측은 아래 유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에 따라 관세를 철폐한다.

- ① A 유형으로 분류된 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완전 철폐한다.
- ② B 유형으로 분류된 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이후 4년간 균등 인하된 후 협정개시 4차년부터 무관세로 전환된다.
- ③ C 유형으로 분류된 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이후 8년간 균등 인하된 후 협정개시 8차년부터 무관세로 전환된다.
- ④ D 유형으로 분류된 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이후 10년간 균등 인하된 후 협정개시 10차년부터 무관세로 전환된다.
- ⑤ E 유형으로 분류된 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이후 12년간 균등 인하된 후 협정개시 12차년부터 무관세로 전환된다.
- ⑥ F 유형으로 분류된 상품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⑦ G 유형으로 분류된 상품에 대한 관세는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협정 이행 5차년 1월 1일에 8.3% 인하한 후, 8차년까지 매년 8.3% 인하한다. 협정 이행 9차년 1월 1일부터 12차년까지 매년 16.7% 인하되고, 협정 이행 12차년 1월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⑧ H 유형으로 분류된 상품에 대한 관세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3차년부터 10차년까지 균등 인하된 후 10차년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1.2. 비관세장벽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양측은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어떤 형태의 조치도 도입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 단, GATT 1994 11조와 그의 해석에 따른 수입제한 조치는 예외로 한다.

양측은 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위의 금지 규정과 관련된 GATT 권한과 의무조항에서도 다음 조치를 도입, 유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 ①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발동하는 경우를 제외한 수출 및 수입 가격 요구
- ② 수입 허가
- ③ GATT 1994 6조에 합치되지 않는 수출자율규제

어느 당사국이 제3국에 대한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경우 상대국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면 안 되고, 상대국에 수출되지만 제3국으로 재수출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요건을 부과해서도 안 된다. 또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조치를 유지하거나 도입하는 경우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해당 국가에서 상대국 상품의 유통, 가격, 분배가 불합리하게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1.3. 농업

양측은 농산물 수출보조 철폐를 위한 다자간 노력의 목적에 대해 공감하고, 수출보조 제거 및 재도입 금지를 위한 WTO 협정문 제정에 공동 노력한다. 아래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측은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해 어떤 형태의 수출보조를 도입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

어느 당사국(수출국)이 수출보조를 받은 제3국의 농산물이 상대국으로 수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당사국(수입국)은 수출국의 서면 요청에 의해 제3국의 수출보조 효과를 상쇄시킬 조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수출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입국이 상계조치를 취할 경우 수출국은 상대국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수출보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어느 당사국이 자국 농산물의 분류, 등급, 유통에 관한 조치를 유지하거나 도입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이 직접적 소비용이거나 또는 가공용이거나를 막론하고 상대국의 기준에 합치시켜야 하며, 그러한 등급이 상대국의 농산물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화 등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WTO에서 규정하는 농산물 분류, 등급, 유통에 관한 권한을 초월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양측 대표로 구성되는 농업무역작업반(Working Group on Agricultural Trade)구성하여 1년에 1회 이상 회합을 갖는다. 동 작업반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와 협력하여 무역에 영향을 주는 농산물 등급 및 표준화 등의 운용 등을 검토한다. 또한 농산물의 등급 및 표준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앞의 관세철폐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일부 농산물에 대해 아

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조건하에서 추가적인 수입부과금의 형태로 구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와 기존 관세의 합이 기존의 최혜국대우 실행 관세 또는 동 협정 발효전의 실행 관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어느 당사국은 해당 농산물의 수입가격이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동 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구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구제조치 발동에 기준이 되는 수입가격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칠레산 농산물은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F.O.B 수입가격으로 계산되는 반면, 칠레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물은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C.I.F 수입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발동가격은 해당 품목의 역사적인 수입가격에 의해 결정되는데 양측은 정기적으로 발동가격을 평가, 업데이트하는 데 동의한다.

표 1 미국의 농산물 구제조치 발동 가격

HS2002	품목	발동가격(US \$/kg)
0704904020	브로콜리, 신선 또는 냉장	0.38
0706100500	당근, 신선 또는 냉장	0.46
0709402000	뿌리 이외의 셀러리, 신선 또는 냉장)	0.58
0709700000	시금치, 신선 또는 냉장	0.65
0709904500	단옥수수, 신선 또는 냉장	0.51
07099091	기타 채소, 신선 또는 냉장	0.70
07149005	중국밥, 신선 또는 냉장	0.70

표 1 계속

HS2002	품목	발동가격(US \$/kg)
0710808500	양배추의 일종(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썰서 조리한 것), 냉동	0.85
07115100	아가리쿠스속 버섯	1.44
0711591000	버섯, 일시적 저장처리,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것	1.44
0712202000	양파분(분말)	0.77
0712204000	양파, 건조, 분 또는 분말제외	1.48
0712904020	마늘 분 또는 분말	0.56
0712904040	마늘, 건조	0.43
0804400000	아보카도, 신선 또는 건조	1.05
0807198222	멜론, 신선, 6/1에서 11/30을 포함하는 것	0.28
0811908040	체리(버찌), 설탕 첨가, 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찢 것, 냉동	1.24
0811908060	체리, 신것	1.01
0811908080	기타 과실 & 견과류	0.86
2002100020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1.4kg이하 용기에 담긴것	0.47
2002100080	전체 또는 조각상의 토마토,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1.4kg이상 담긴것	0.35
2002908010	토마토편제, 1.4kg이하 용기에 담긴 것	0.66
2002908020	토마토편제, 1.4kg이상 큰 용기에 담긴 것	0.53
2002908030	토마토편제, 1.4kg이하 용기에 담긴 것	0.61

표 1 계속

HS2002	품목	발동가격(US, \$/kg)
2002908040	토마토피레, 1.4kg이상 용기에 담긴 것	0.38
2002908050	토마토,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0.65
2003900010	버섯,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	1.39
2003900090	기타 버섯	1.39
2003100127	버섯전체나 덜 자란 버섯, 조제 또는 저장처리, 225g 이하 용기에 담긴 것	2.33
2003100131	슬라이스된 버섯, 조제 또는 저장처리, 225g 이하 용기에 담긴 것	2.25
2003100137	기타버섯, 225g 이하 용기에 담긴 것	1.90
2003100143	버섯전체나 덜 자란 버섯, 조제 또는 저장처리, 225g 이상 용기에 담긴 것	1.68
2003100147	기타버섯, 225g 이상 용기에 담긴 것	1.49
2003100153	기타버섯, 225g 이상 용기에 담긴 것	1.44
2005600000	아스파라거스,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얼리지 않은 것	1.12
2005908000	아티초크,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얼리지 않은 것	1.29
2006002000	체리, 설탕으로 조장처리	2.06
2006005000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일, 견과, 식물의 기타부분	1.56
2007100000	균질화한 과실의 조제품	1.41
2008303500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오렌지 과육	1.30

표 1 계속

HS2002	품목	발동가격(U S, \$/kg)
2008400020	배, 조제 또는 저장처리, 기타, 1.4kg 또는 그 이하 용기에 담긴 것	0.66
2008400040	배, 조제 또는 저장처리, 기타, 1.4kg 또는 그 이상 용기에 담긴 것	0.65
2008504000	살구,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0.90
2008929030	복숭아 또는 배의 과실혼합물, 1.4kg 이하 용기에 담긴 것	0.81
2008929035	복숭아 또는 배의 과실혼합물, 1.4kg 이상 용기에 담긴 것	0.77
2008929040	오렌지 또는 포도를 포함한 과실 혼합물	1.21
2008929050	기타 과실 혼합물	0.92
0008929092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조제된 곡류	3.63
2008929094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46
2009110020	발효하지 아니한 오렌지 주스, 냉동, 0.946ℓ 이하 용기	0.25
2103204020	기타 토마토 소스, 1.4kg 이하 용기에 담긴 것	0.80
2103204040	기타 토마토 소스, 1.4kg 또는 그 이상 용기에 담긴 것	0.31

표 2 칠레의 농산물구제조치 발동가격

HS2002	품목	발동가격(US \$/kg)
02109100	영장류의 것(육과 식용설육/염장훈제)	3.49
02109200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육과 식용설육)	3.49
02109300	과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3.49
02109900	육과 식용설육	3.49
04070010	조란, 신선한것	23.61
04070090	조란 기타	23.61
10062000	현미	0.52
10063010	멥쌀	0.27
10063020	찰쌀	0.27
10063090	기타 쌀제품	0.27
10064000	쇄미	0.21
11023000	쌀가루	0.74
11031100	분쇄물, 조분(밀의 것)	0.35
11081100	전분(밀의 것)	0.30
11090000	밀의 글루텐(건조한것인지의 여부불문)	0.85

위의 구제조치 발동은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① 미 달러화로 표시된 수입가격과 발동가격과의 차이가 발동가격과 같거나 10% 이하일 경우 추가적인 관세 미 부과

② 수입가격과 발동가격간의 차이(이하 관세차이라 칭함)가 발동가격의 10~40% 인 경우 최혜국대우 관세와 우대관세 차이의 30%의 추가 관세 부과

③ 관세차이가 발동가격의 40~60%인 경우 최혜국대우 관세와 FTA 관세율표상의 관세 차이의 50%의 추가 관세 부과

④ 관세차이가 발동가격의 60~75%인 경우 최혜국대우 관세와 우대관세 차이의 70%의 추가 관세 부과

⑤ 관세차이가 발동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최혜국대우 관세와 우대관세 차이의 100%의 추가 관세 부과

어느 당사국도 동일 농산물에 대해 농산물 구제조치에 의한 추가적인 관세와 동 협정 8장에서 규정(무역구제)하는 구제조치를 동시에 발동할 수 없다. 또한 양측은 이러한 구제조치와 GATT1994 19조에 의한 구제조치를 동시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구제조치의 발동은 FTA 협정 1년 이내에만 가능하고 FTA 협정에 의해 무관세가 된 품목에 대해서는 구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아울러 TRQ 적용품목 중 쿼터내 관세가 무관세로 인화된 농산물에 대해서도 구제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

각 당사국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구제조치를 운영해야 하며, 구제조치를 발동한 후 60일 이내에 상대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구제조치를 발동한 당사국은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구제조치의 적용 요건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상품무역위원회(Committee on Trade in Goods)는 농산물 구제조치 및 발동가격 등에 대해서 논의,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농업구제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은 주로 채소 및 과일로서 브로콜리, 당근, 셀러리, 단옥수수, 양배추, 양파, 마늘, 아보카도, 멜론, 토마토, 버섯류, 아스파라거스, 오렌지 등 78개 품목이다. 칠레는 채소나 과일보다는 일부 육류와 수산물, 그리고 곡물에 대해 농업구제조치를 강구해 놓았다. 칠레가 미국과의 FTA에서 밀 등에 대한 가격대 운용을 포기한 대신 구제조치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2. 미국 양허안 분석

미국-칠레 FTA에 따른 미국의 상품양허의 기준 관세율은 2002년 1월 1일 현재 실행 세율 또는 2004년 1월 1일 현재 WTO 관세 철폐 양허에 따른 세율 중 낮은 것으로 한다.

미국의 관세는 앞에서 명시한 A에서 H까지의 여덟 가지 유형 이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다섯 가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철폐된다.

① J 유형으로 분류된 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1년부터 7차년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8차년 1월 1일부터 5년간 균등 인하된 후 12차년 1월 1일부터 무관세로 전환된다.

② K 유형으로 분류된 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이후 2년간 균등 인하된 후 협정개시 2차년 1월 1일부터 무관세로 전환된다.

③ L 유형으로 분류된 상품에 대한 관세는 10단계에 걸쳐 철폐된다. 즉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상품 관세는 협정 발효부터 6차년까지 매년 5% 인하된 후 7차년 1월 1일부터 9차년까지 매년 10%씩 인하된다. 10차년부터 비로서 무관세로 전환된다.

④ M 유형 및 N유형으로 분류된 상품은 9812류(망원렌즈) 등으로 농산물은 아니다.

미국은 쇠고기, 낙농제품, 설탕, 땅콩, 담배, 목화, 아보카도, 포도주, 가

금육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관세철폐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쿼터를 제공한 후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주요 품목별 쿼터 제공내역은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품목별 미국의 TRQ 적용 내용

구 분	내 용
o 쇠고기	o 협정발효 1차년부터 3차년까지 1,000톤에서 매년 10%씩 증량한 후 4차년부터 쿼터철폐 o In Quota(IQ): 무관세, Out Quota(OQ): B 유형 관세인하
o 치즈	o 1차년부터 11차년까지 1,432톤에서 매년 6.98%씩 증량후 12차년부터는 쿼터 철폐 o IQ: 무관세, OQ: J 유형관세인하
o 분유	o 1차년 828톤에서 11차년까지 1,629톤으로 증량후 12차년부터 쿼터 철폐 o IQ: 무관세, OQ: J 유형관세인하
o 버터	o 1차년 300톤에서 시작하여 11차년까지 590톤으로 증량후 12차년부터 쿼터 철폐
o 농축우유	o 1차 489톤에서 시작하여 11차년까지 962톤으로 증량한 후 12차년부터 쿼터 철폐 o IQ: 무관세, OQ: J 유형 관세인하
o 기타 낙농제품	o 1차년 452톤에서 시작하여 11차년까지 889톤으로 증량한 후 12차년부터 쿼터 철폐 o IQ: 무관세, OQ: J 유형 관세인하
o 설탕	o 1차년 2,000톤에서 시작하여 11차년까지 매년 5%씩 증량한 후 12차년부터 쿼터 철폐 o IQ: 무관세, OQ: E 유형 관세인하
o 잎담배	o 1차년 617톤에서 시작하여 11차년까지 1,005톤으로 늘린 후 12차년부터 쿼터 철폐

	o IQ: 무관세. OQ: E 유형 관세인하
o 아보카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o 1차년 34,000톤에서 11차년까지 매년 5% 증량한 후 12차년 부터 쿼터 철폐 o IQ: 무관세. OQ: G 유형 관세인하
o 아보카도 (1월 1일부터 9 월 30일)	o 1차년 15,000톤에서 11차년까지 매년 5%씩 증량한 후 12 차년부터 쿼터 철폐 o IQ: 무관세. OQ: G 유형 관세인하
o 아보카도 (2월 1일~9월 15일)	o 2차년부터 연차적으로 쿼터 증량후 18차년부터 쿼터 철폐 o IQ: 무관세. OQ: G 유형 관세인하
o 아보카도 (9월 16일~1월 31일)	o 2차년부터 연차적으로 쿼터 증량후 18차년부터 쿼터 철폐 o IQ: 무관세. OQ: G 유형 관세인하
o 가금육	o 협정 이행 3차년 8,000톤부터 9차년까지 매년 5%씩 증량 한 후 10차년부터 쿼터 철폐 o IQ: 무관세. OQ: H 유형 관세인하

쇠고기의 경우 협정발효 1차년도에 1,000톤에서 시작하여 3차년까지 매년 10%씩 증량한 후 쿼터를 철폐하되 쿼터외 물량에 대한 관세는 B유형의 관세철폐 계획에 따라 철폐된다. 즉 쇠고기 관세는 협정 발효 이후 4년간 균등 인하된 후 협정개시 4차년부터 무관세로 전환된다.

액상낙농제품은 J 유형에 따라 관세를 철폐한다. 즉 협정 발효 1년부터 7차년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8차년 1월 1일부터 5년간 균등 인하된 후 12차년 1월 1일부터 무관세로 전환된다. 치즈는 11년간 쿼터를 증량시킨 후 쿼터제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차 연도에 설정된 쿼터는 1,432톤이고 쿼터 증량 최종연도인 11차년에 2,817톤이다. 쿼터외 물량에 대한 관세는 액상낙농제품과 마찬가지로 J 유형에 따라 철폐될 것이다.

분유쿼터는 1차년 828톤에서 시작하여 11차년에 1,629톤으로 늘어난다.

쿼터의 물량에 대한 관세는 J 유형에 따라 철폐된다. 그밖에 버터, 농축우유, 기타낙농품 등도 11차년까지 일정 물량의 쿼터가 주어지고 12차년에 쿼터제가 철폐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모든 낙농제품에 대한 관세는 J 유형에 따라 철폐될 예정이다. 즉 7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5년간 균등 인하를 통해 관세가 철폐될 것이다.

미국의 또 다른 민감 품목 중의 하나인 설탕은 낙농제품과 마찬가지로 11년간 쿼터가 증량된 후 12차년부터 쿼터제가 철폐되도록 되어 있다. 즉 설탕쿼터는 1차년 2,000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5%씩 증량하여 11차년에 3,258톤에 이를 예정이다. 쿼터의 물량에 대한 관세는 E 유형에 따라 철폐된다. 즉 협정 발효 이후 12년간 균등 인하된 후 협정개시 12차년부터 무관세로 전환된다. 미국은 설탕 관세 철폐에 있어서 12년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땅콩에 대한 관세도 설탕과 마찬가지로 12년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철폐되도록 되어 있다.

잎담배 관세도 11년간 쿼터량 증량 이후 철폐될 예정이다. 잎담배 쿼터량이 1차년도 617톤에서 시작하여 11차년도에 1,005톤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쿼터 수입권은 대부분 선착순에 의해 배분된다. 쿼터의 물량에 대한 관세는 12년간 인하된 후 철폐될 예정이다. 목화 관세도 동일한 방식으로 철폐될 것이다.

아보카도에 대해서도 쿼터량이 주어졌는데 시기별로 쿼터배정량이 다르다. 미국에서 아보카도 비성수기라 할 수 있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차년도 34,000톤의 쿼터에서 시작하여 11차년에 55,382톤으로 배정되지만 성수기인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1차년도 15,000톤에서 11차년도 24,433톤으로 주어졌다. 아보카도 성수기에는 쿼터물량을 줄여서 미국 아보카도를 보호하려는 미국 측의 의도가 엿보인다. 쿼터의 물량에 대한 관세는 G 유형에 따라 철폐될 예정이다. 즉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협정 이행 5차년 1월 1일에 8.3% 인하한 후, 8차년까지 매년 8.3% 인하

한다. 협정 이행 9차년 1월 1일부터 12차년까지 매년 16.7% 인하되고, 협정 이행 12차년 1월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백포도주(2리터 이하 용기) 관세는 8차년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되다가 9차년 1월 1일에 기본세율의 7.7%가 인하된다. 10차년에는 기본세율의 35.9%가 인하된다. 11차년에는 기본세율의 64.1%가 인하된다. 12차년부터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타포도주(AG22042150) 관세는 11차년까지 기본세율로 유지되다가 12차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타백포도주(AG22042920) 관세는 8차년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되다가 9차년에 기본세율의 2.7%가 인하된다. 10차년에 기본세율의 32.4%가 인하되고, 11차년에 기본세율의 62.2%가 인하된 후 12차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4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긴 (AG22042960)포도주 관세는 협정 발효부터 기본세율의 8.1%가 인하된다. 2차년에는 기본세율의 16.3%가 인하되고 3차년에는 기본세율의 24.4%가 인하될 예정이다. 4차년과 5차년에는 각각 기본세율의 32.6%, 40.7%가 인하된다. 이처럼 연차적으로 점점 더 큰 폭으로 관세가 인하되어 12년차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가금육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3차년도부터 쿼터가 주어져 매년 5%씩 증량되어 9차년에 10,721톤으로 늘어난 뒤 12차년부터 쿼터가 철폐된다. 쿼터의 물량에 대한 관세는 H유형에 따라 철폐될 예정이다. 즉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3차년부터 10차년까지 균등 인하된 후 10차년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3. 시사점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시 미국이 취하는 상품양허의 기본 골격은 관세철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호주와의 FTA에서도 거

의 유사하지만 미국은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A유형부터 H 유형 등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쿼터제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쿼터폐지 일정에 맞춘 관세철폐 일정을 선택한다.

미국-호주 FTA에서는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최장 18년까지 잡았지만 미국-칠레 FTA에서는 이행기간을 12년까지로 국한시킨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는 미국 측의 입장에서 상대국의 농업경쟁력이 미국보다 강한 경우에는 자국 농업보호를 위해 이행기간을 길게 잡지만 상대국의 농업경쟁력이 미국보다 강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을 짧게 잡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호주 FTA에서 미국은 자국의 민감품목인 설탕 및 설탕 관련 제품을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칠레와의 FTA에서는 최장 12년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이것은 앞서 이행기간의 설정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자국에 유리한 FTA 경우에는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미국의 FTA 추진전략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미국이 자국보다 농업경쟁력이 매우 뒤지는 우리나라와 FTA를 추진하는 경우, 이행기간은 짧게, 그리고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 추진 가능성을 타진할 때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권오복 obkwon@krei.re.kr 02-3299-42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